

자동차보험 상품요약서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보험종목별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개인용	퍼마일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임)
업무용	퍼마일 업무용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모든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퍼아워 자동차보험	타인 소유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 단, 대리운전 등 자동차 취급업자는 제외
기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기타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판매용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 ① 대상 :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취지 : 인수 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상품별 특징

구분		내용
개인용	퍼마일 개인용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6가지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음. 퍼마일 특별약관을 통해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
업무용	퍼마일 업무용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6가지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음. 퍼마일 특별약관을 통해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6가지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음
이륜차	이륜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6가지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음
기타	퍼아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타인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의 설정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30일까지 시간단위로 할 수 있음
기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3가지 담보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업에 따라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장 특별약관 담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설정한 보상책임기간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음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 의무보험 관련사항

① 정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한도

대인Ⅰ	사 망	최고 1.5억원
	부 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대 물		2,000만원 이상

③ 특 징

- 강제보험성 :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 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제한(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영을 중지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배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 *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I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매1일 초과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5]

○ 미가입운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대인배상 II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특징 : 대인 I의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직접손해: 수리비용, 교환가액 -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16.4.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의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보상한도 :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
3억원/5억원/10억원)

④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구 분		사망/부상/후유장애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	자기신체 사고	1,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5,000만원
		1억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1억원/1,000만원/1억원
		2억원/2,000만원/2억원

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조건 :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보상한도 : 2억원

○ 특 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⑥ 자기차량손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동차의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

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특징

- 사고당시의 보험가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함
- 전부손해일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음
- 전부손해가 발생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

□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담보종목		주요 면책사항
대인배상 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의 담 보	공통적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II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대물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자동차에 신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 위에 표시한 사항이외에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있음(약관 참조)

□ 주요 특별약관

①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가족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피보험자와 그 가족(형제·자매 포함)으로 한정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1인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부부운전자와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 또는 영업용의 경우 대여자동차의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특정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④ 기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 I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 경/4종화물자동차이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용 됩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승합차 및 승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매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퍼마일 특별약관(연납후정산형) : 보험만기시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율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다. 보험료 분석표

저희 캐롯손해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rotins.com 의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료 산출 기초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단위: %)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비사업용	책임보험	86.2	13.8	0.0
	임의보험	84.2	13.8	2.0
사업용	책임보험	87.2	12.8	0.0
	임의보험	85.2	12.8	2.0

마. 자동차보험 Q&A

Q) 의무보험에 미가입시의 불이익은?

A)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채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A) 음주운전 중 사고발생 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혼자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만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기간 도중 연령이 만26세가 되었는데 특약변경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동생이 운전 중 사고시의 보상여부?

A)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롯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과거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Q) 밤새 주차중인 차량을 누군가 파손한 경우의 보상여부는?

A)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금액에 따라 할증 및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Q)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부사관 이하의 계급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군 운전경력 확인서'또는 병무청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친구의 차량(가족한정특약가입)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무보험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 하시면,상기와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친구의 차량으로 책임보험 이외(대인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본인명의로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했는데 이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 시 대물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A) 친구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배상은 불가능합니다.